#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1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 송옥주 · 이병진 · 정성호

박 정・백승아・김성환

이수진 · 김재원 · 노종면

한정애 · 용혜인 · 박해철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.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, 같은 기간 대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.6배임.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,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,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음.

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17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폭염·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) ① 지휘관은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하여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②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폭염 • 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17조의3(폭염·한파 등에 따른
	조치 등) ① 지휘관은 폭염ㆍ
	한파 등으로 인하여 「기상
	법」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
	경우에는 작전에 제한이 없는
	선에서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
	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	②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, 각
	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
	은 폭염・한파 등에 대비하여
	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
	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
	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